

국회의원(최민희) 징계안

의안 번호	4915
----------	------

요구연월일 : 2024 10. 25.

요 구 자 : 배준영 · 김소희 · 강선영
최형두 · 김 건 · 강대식
우재준 · 조지연 · 김재섭
김상욱 · 김종양 · 이종욱
박수민 · 신동욱 · 조은희
박성훈 · 박준태 · 유상범
강명구 · 정희용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최민희)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에
따라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최민희는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최수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

GO모니터단에서 지적인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 위원 질문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공정한 위원회 진행을 촉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최수진 국회의원은 본인에게 부여 받은 발언시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최민희는 임의로 발언을 제한시키고 이후 최수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권을 빼앗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임.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최민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장에서 정당하게 부여받은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하였음. 이와 관련 「국회법」 제145조에서는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 「국회법」 위반사항임.

마. 최수진 국회의원은 본인의 발언시간에 위원장의 허락하에 정당하게 발언을 하였고 해당 내용에 허위사실과 비방 등의 내용이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최민희는 단순히 발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발언권을 박탈한 것임.

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최민희는 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발언기회를 박탈한 것임.

사. 위와 같이 국회의원 최민희는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당일 회의의 발언권을 금지하였고,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를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